

# KCGS Report

제14권 4호 | 통권 제172호  
2024.4.



한국ESG기준원

## KCGS Report 제14권 4호

발행일: 2024년 4월 30일

발행인: 심인숙

발행처: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http://www.cgs.or.kr)

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 KCGS Report

제14권 4호 | 2024. 4.

## ● ESG 동향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과 위험관리 및 환경실적의 상관관계 분석: 국내 상장사를 중심으로	2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2) - 코스닥150 기업을 중심으로 -	10

## ● Global News

1. 미국, EU,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비교 및 제언	23
2. EU 의회,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법률 채택	26

---

---

## ESG 동향

#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과 위험관리 및 환경실적의 상관관계 분석: 국내 상장사를 중심으로

원소정\*

- ▶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요소는 경영진과 이사회에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환경경영 관리 및 감독 수준임
-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환경 거버넌스 구축 수준이 다른 환경경영 주요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
- ▶ 2023년 국내 상장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환경 거버넌스 구축은 환경 위험관리 부문, 환경실적 개선 부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짐
- ▶ 다만, 세부분석을 통해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과 환경실적 개선 사이의 상관성이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함

---

### 환경경영 거버넌스의 의미

- 환경경영 거버넌스 (KCGS, ESG 모범규준)
  - 환경경영의 의미는 기업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음
  -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기업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KCGS 환경 모범규준 3)

---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실 연구원, sojung@cgs.or.kr

- (3.1) 기업은 전사적 환경경영체계 및 주요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 (3.2) 기업은 환경경영의 목표, 활동 및 성과 등 주요 이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환경경영 활동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3.3) 기업은 환경경영체계를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하며, 환경경영을 전담하는 실무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3.4) 기업은 임직원의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임직원의 환경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경영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감독, 전담 인력과 조직 등의 전사적 차원의 체계 구축, 기업 내 환경경영 내재화는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환경경영 거버넌스 공시 권고사항 (TCFD)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TCFD에서 권고하는 지배구조 관련 공시 요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sup>1)</sup>

-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및 관리하는 경영진 역할
-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중장기에 거친 위험과 기회
-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사업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 차원의 모니터링,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중장기적 목표 및 전략 수립을 주요한 공시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음

## 주제 선정 배경

#### □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수준과 타 부문의 연계성 분석

- 환경경영에 대한 경영진 및 이사회적 적극적 의지를 반영하는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환경경영 영역을 탐구하고자 함
- 기업의 주요 환경경영 영역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위험관리) 기업이 환경적 위험 및 기회요인을 식별하여 관리하는 영역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전략적 행위를 의미함

1)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운영 및 성과) 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 등 주요 환경 성과 지표를 집계 및 관리하는 영역을 포함함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상장사의 대표적인 환경경영의 두 영역과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기업의 환경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자 함
- 더불어 기업의 환경 거버넌스 구축은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sup>2)</sup>의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와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될 확률이 높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상관관계는 환경 거버넌스 구축 수준이 기업의 주요 환경경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sup>2)</sup>

## 본론

- KCGS 환경평가 대분류 및 환산점수
  - KCGS 모범기준에 기반하며 TCFD, SASB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KCGS 환경평가는 아래 네 가지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음
    - (리더십과 거버넌스) 경영진과 이사회 수준에서 환경경영 관련 의지를 표명하고 방침과 목표 등을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위험관리) 환경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을 식별 및 관리할 것과 관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운영 및 성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 성과에 대한 관리 및 개선을 권고함
    - (이해관계자 소통) 환경정보의 적합한 공시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와 소통을 권고함
  - KCGS 환경평가 각 대분류는 관련된 평가 문항들의 집합으로 구성됨
    - 대분류 환산점수란 해당 대분류에 속하는 평가 문항에서 획득한 점수를 백분율로 표현한 수치를 의미함
    - 본 보고서에서는 이해관계자 소통 환산점수를 제외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에 대한 대분류 환산점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2023년 국내 상장사의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수준이 기업의 주요 환경경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 분석 대상
  - 2023년 KCGS 환경평가를 받은 국내 상장기업 930사<sup>3)</sup>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해당

2) 기업의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이 환경경영에 대하여 가지는 의지와 의사결정의 수준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상관관계 분석 시 이를 독립적인 변수로 고려할 수 있음

3) 평가대상 기업에는 유가증권 상장회사 전체, 코스닥 상장회사 중 일부 지수에 포함되는 경우, 주요 금융사(일부 비상장),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포함됨

- 기업의 대분류별 환산점수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함
- 2023년 평가의 평가 연도(당해 연도, FY)가 2022년이므로 실제로는 평가대상 기업의 2022년 환경경영 수준을 분석한 것임
- 총 930개 기업이 각각 네 개의 대분류별 환산점수를 가지므로 3,720개의 환산점수 데이터를 본 분석에서 주로 사용함

□ 주요 변수

- 아래 <표 1>에 본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에 대해 정리함

<표 1> 분석 변수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비고
리더십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전략 및 목표, 환경경영 내재화	종속변수
위험관리	환경적 위험 및 기회요인의 식별 및 관리	설명변수
운영 및 성과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환경경영 운영에 대한 지표 및 실적 <sup>4)</sup>	설명변수
이해관계자 소통	이해관계자 대응, 환경정보 공개	통제변수
KCGS 환경업종	환경 영향도를 고려하여 분류한 21개의 산업 분류 체계	통제변수
자산규모	2021년 자산규모를 2조/5천억 원 기준으로 분류	세부분석 분류기준

출처: 한국ESG기준원 홈페이지 ESG평가 방법론 참고하여 본인 작성

- 본 분석의 핵심이 되는 종속변수는 기업별 리더십과 거버넌스 환산점수이며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수준에 대한 프락시로 활용함
- 기업별 위험관리 환산점수와 운영 및 성과 환산점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 이해관계자 소통 환산점수와 KCGS 환경업종을 분석 시 통제변수로 활용함

□ 분석방법론

- 본 분석은 보통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이용한 다중 회귀모형을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밝힘
- 본 분석에서 사용한 모형을 아래와 같은 분석 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
- $Env.Governance = a + \beta_1 Env.RM + \beta_2 Env.KPI + \beta_n X + \epsilon$   
 - (*Env.Governance*)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수준을 나타내는 리더십과 거버넌스 대분류 환산점수

4) 이 외에도 물/토양/생물다양성, 오염물질/화학물질, 친환경 공급망,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중분류 영역이 포함됨

- (*Env.RM*) 환경적 위험 및 기회요인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위험관리 대분류 환산점수
- (*Env.KPI*) 운영한 환경경영에 대한 정량적 지표 및 개선 실적을 나타내는 운영 및 성과 대분류 환산점수
- ( $\beta_1$ ) 환경 거버넌스 구축 수준과 위험관리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 ( $\beta_2$ ) 환경 거버넌스 구축 수준과 환경실적 개선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 더불어, 분석 시 설명변수(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를 표준화한 자료를 통해 회귀계수( $\beta$ )를 도출하였으므로, 도출된 회귀계수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로서 양측 간의 상관성 혹은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함
- 설명변수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명확하고 절댓값이 클수록 종속변수와의 강한 상관성을 가짐

□ 분석 결과

- 아래 <표 2>에 본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함

<표 2> 환경경영 거버넌스와 환경경영 주요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sup>5)</sup>

자산 규모	평가대상 기업 (1)	2조 원 이상 (2)	5천억~2억 원 (3)	5천억 원 미만 (4)	공공	금융사
위험관리 (가)	0.388*** (0.0251)	0.439*** (0.0703)	0.333*** (0.0503)	0.422*** (0.0393)	0.297 (0.320)	0.284** (0.111)
운영 및 성과 (나)	0.328*** (0.0287)	<b>0.167*</b> (0.0885)	<b>0.340***</b> (0.0597)	<b>0.388***</b> (0.0372)	0.201 (0.295)	0.314** (0.132)
이해관계자 소통	0.243*** (0.0239)	0.251*** (0.0783)	0.234*** (0.0482)	0.166*** (0.0323)	0.037 (0.672)	0.310*** (0.115)
환경업종	-0.153 (0.0631)	-0.116 (0.2037)	-0.069 (0.1478)	-0.253*** (0.0724)	-2.437 (2.455)	1.151 (3.901)
Cons.	21.996 (6.931)	25.546 (23.6246)	14.697 (16.3391)	32.104*** (7.9222)	325.613 (314.76)	-129.172 (457.634)
R-square	0.864	0.587	0.775	0.773	0.759	0.827
기업 수	930	134	234	500	7	55

출처: 2023년 KCGS 환경평가 대분류 환산점수 활용하여 본인 작성

5) 리더십과 거버넌스와 해당 변수와의 상관계수값을 표로 작성함  
 괄호 안에 값은 표준편차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의 개수로 표기함 (\*\*\* p<0.01, \*\* p<0.05, \* p<0.1)

- <표 2>는 2023년 KCGS 환경평가 대분류 환산점수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리더십 및 거버넌스와 해당 변수가 가지는 상관성을 분석함
- <표 2>의 (1) 열은 전체 평가대상 기업 930 사에 대한 분석 결과로 국내 상장사의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수준은 위험관리 영역(0.388)뿐 아니라 실적 영역(0.328)과도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짐
- 기업 자산규모 5천억 원, 2조 원을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수행한 세부 분석 결과를 <표 2>의 (2)~(4) 열에 요약함
  - (2) 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환경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사이에서 유의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비해 환경실적과 거버넌스의 연계성은 확인할 수 없음
  - (3)~(4) 열 자산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의 경우, 환경 거버넌스와 두 영역 사이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짐
- 환경경영 거버넌스 수준과 환경실적 사이의 상관성은 기업 자산규모와 서로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나) 행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그룹의 상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고, 세 그룹 중 상관계수의 크기가 가장 작으므로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가짐
  - (나) 행 자산규모 5천억 원 미만 그룹의 상관계수는 0.388로 세 그룹 중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 결론 및 제안

-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상장사의 환경 거버넌스 구축 수준은 기업 내 환경경영 주요 영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고려해 볼 때, 경영진과 이사회는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수준이 기업 내 환경경영 부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짐
  - 이러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할 때, 도출된 결과는 단순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환경 거버넌스 구축 수준이 기업의 주요 환경경영 영역에 미치는 영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 환경 거버넌스와 주요 환경경영 영역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제3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음<sup>6)</sup>

6) 제3의 요인을 통제하거나 도구 변수를 사용한 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 방향성 제안함

□ 분석 의의 및 환경경영 내재화 방안

○ 위 관점에서 본 분석 결과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함

- 기업 내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수준은 환경경영과 관련된 다른 주요 영역의 관리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전사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경영 내재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영진과 이사회에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KCGS 환경 모범규준에서는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내재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기업의 환경경영 목표, 활동 및 성과 등 주요 이슈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해야 함 (KCGS 환경 모범규준 3.2)
- 조직 구성과 인적자원 배분을 통한 전사적 환경경영 체계 구축 및 환경 성과 지표의 수립과 보상 체계 연동을 촉구함 (KCGS 환경 모범규준 3.1)

□ 자산규모별 환경경영 내재화 방안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그룹에서 환경 거버넌스 구축 수준은 환경경영 운영에 따른 실적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운영 및 성과 대분류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등 환경적 정량 실적의 연도별 개선 여부에 방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음
- 비교적 환경경영 내재화 수준이 높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그룹의 경우, 환경적 정량 지표가 이미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큰 폭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환경경영 내재화 수준이 일정 수준을 상회할 경우, 환경실적의 개선에 대한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실적의 개선은 기후변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sup>7)</sup> 환경경영 거버넌스를 통해 점진적이고 전사적인 개선을 이뤄낼 필요가 있음

○ 자산규모 2조 원 이하 그룹에서 환경 거버넌스 구축 수준은 환경경영 주요 부문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음

-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에 방점을 두어 각 기업의 사업모델과 당면한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환경경영 내재화를 이룰 수 있음

---

7) 분석에 사용된 리더십과 거버넌스 환산점수에 대한 통계량(평균) 확인 결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은 득점률 수준을 보임

※ 참고: 유가시장 상장사 대상 분석 결과 표 (KCGS 2023년 환경평가 기준)

자산 규모 (유가증권)	평가대상 기업	2조 원 이상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5천억 원 미만	공공	금융사
위험관리	0.390*** (0.0275)	0.449*** (0.0716)	0.372*** (0.0533)	0.407*** (0.0461)	0.297 (0.3197)	0.279** (0.122)
운영 및 성과	0.332*** (0.033)	0.143 (0.0918)	0.294*** (0.0659)	0.504*** (0.0453)	0.201 (0.2953)	0.314** (0.1468)
이해관계자 소통	0.230*** (0.0276)	0.252*** (0.0811)	0.235*** (0.0538)	0.073* (0.0405)	0.037 (0.6716)	0.269** (0.1324)
환경업종	-0.067 (0.0743)	-0.134 (0.2092)	-0.129 (0.171)	-0.08 (0.0867)	-2.437 (2.4551)	-0.169 (4.3311)
Cons.	13.440* (8.106)	28.335 (24.1311)	21.911 (18.8607)	13.441 (9.4116)	325.613 (314.759)	29.202 (509.0913)
R-square	0.869	0.559	0.782	0.754	0.759	0.775
기업 수	737	131	180	373	7	46

리더십과 거버넌스와 해당 변수와의 상관계수값을 표로 작성함

괄호 안에 값은 표준편차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의 개수로 표기함 (\*\* p<0.01, \*\* p<0.05, \* p<0.1)

출처: 2023년 KCGS 환경평가 대분류 환산점수 활용하여 본인 작성

#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2) - 코스닥150 기업을 중심으로 -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기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코스닥 기업은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 활동', '주주행동주의 대응 및 정보공개', '감사'에 있어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 예컨대 코스닥150 기업 중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기업은 단 2개사로 전체 1.3%에 그쳤으며,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검토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코스닥150 기업 중 약 16%만이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개하고 있었으며, 감사의 30% 이상이 6년 이상 장기 연임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됨
- ▶ 코스닥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및 관련 제도 도입, 2)이사회 권한 확대 및 전문 자문 지원, 3)주주와의 실질적 소통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 수립, 4)종합적 감사 시스템 강화를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바임

### 3) 주주행동주의 대응 및 정보공개

#### • 주주행동주의 대응 현황

- 지난해 행동주의 타깃이 된 국내 기업수는 73개사로 미국·일본·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으며 이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약 7.7배 증가한 수치임<sup>1)</sup>
  - 한국 기업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인식되기에 2024년 영국 행동주의펀드 펠리셔<sup>2)</sup> 등을 시작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제안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박나온 선임연구원(파트장), naon@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박지영 선임연구원, jypark@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박준성 연구원, jspark@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김희경 연구원, hk.kim@cgs.or.kr

1) 서울경제, 2024.2.12., "행동주의 타깃된 韓기업, 작년 73곳 '세계 4위'...3년새 7배 ↑"

2) 비즈니스포스트, 2024.3.5., "행동주의펀드 펠리셔캐피탈, '주당 4500원 배당' 삼성물산 주주제안지지"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직접 지분율은 낮더라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계열사, 기타 우호세력을 통해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가총액 규모가 커 행동주의 투자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실제로 2023년 코스닥150 기업 D사의 소액주주 연대는 자회사 “쪼개기 상장”논란 이후 지속적인 소통 부재 해소(IR 개편) 및 감사 선임, 자회사와의 계약 내용 공개, 주주가치제고 대책 마련 등에 대한 행동주의를 전개했으나 기업은 대화 및 논의를 거부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 소액주주 연대는 전화 및 면담 형태의 대화를 요청하였으나(23.1) D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소액주주 연대는 주주 결집을 위해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함 (23.3)
  - 결국 D사 측은 주주제안 내용 중 IR 개편 부분에 대해서만 수용하기로 하고 주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주간담회 개최를 공지함. 그러나 간담회 일주일 전 대표이사의 불참을 통보하여 주주와의 소통에 있어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 실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주주행동주의를 이끄는 기관투자자 및 사모펀드, 소액주주 연대 등 이른바 행동주의 투자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통적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이며, 관련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기업가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됨
  - 행동주의 투자자는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재무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비효율적 자본 배분, 건전하지 않은 지배구조 등으로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전개함<sup>3)</sup>
  - 주주행동주의가 단기성과를 추구<sup>4)</sup>할 뿐 아니라 경영권 방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증가(Bebchuk, 2013)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2000년대 이후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기업가치 증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미국(Denes et al., 2017)<sup>5)</sup>, 일본(Hamao and Matos, 2018)<sup>6)</sup> 등 해외 실증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 주주행동주의의 전개 방식 중 하나인 주주제안은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며(Bebchuk, 2005)<sup>7)</sup> 시장에서도 주주제안을 중요한 외부 지배구조 통제 메커니즘으로 인식한다고 봄(Luc and Peter, 2011)<sup>8)</sup>

3) 2022년 이후에 국내에서 전개된 다양한 행동주의 사례 및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 황세운, 2023, “주주행동주의펀드 역할 확대에 따른 시장영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3-17

4) Martin Lipton, 2013.08.09., “Current Thoughts About Activism”,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5) Denes, M.R., Karpoff, J.M., McWilliams, V.B., 2017, “Thirty years of shareholder activism: A survey of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44, pp.405-424

6) Hamao, Y., Matos, P., 2018, “U.S.-style investor activism in Japan: The first ten years?”,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48, pp.29-54

7) Bebchuk, Lucian Arye., 2005, “The case for increasing shareholder power.” Harvard Law Review 118, pp.833-917

8) Luc Renneboog and Peter G. Szilagyi., 2011, “The role of shareholder proposals in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7.1, pp.167-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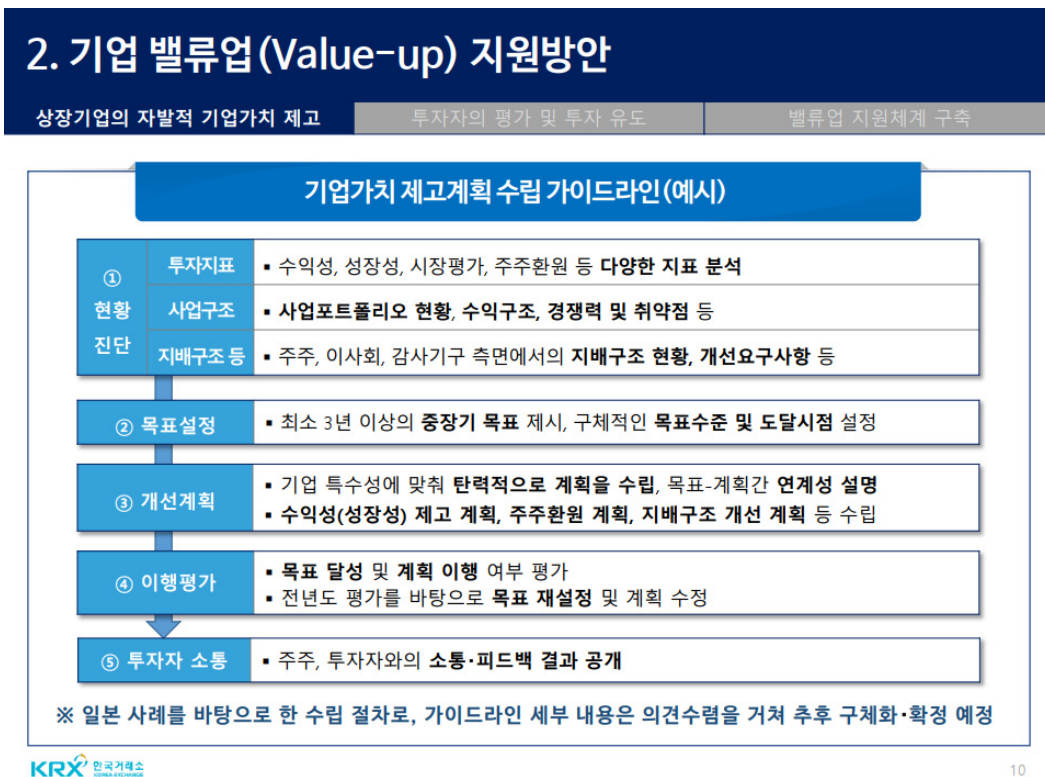
• 주주행동주의 대응을 위한 제언

-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기업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주제안 및 소수주주권 행사, 위임장 대결, 기업과의 대화 및 면담 요청 등의 수단을 사용함
  - 행동주의 투자자가 대상회사의 경영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활동 첫 단계에서는 먼저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배당요구, 이사회 개편, 감사 선임 등을 요구함
  - 경영진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행동주의 투자자는 공개 캠페인 단계로 전환 후 상법상의 주주제안 및 소수주주권 행사로 나아가며, 이후 위임장 경쟁을 통해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안전에 대해 표 대결을 거치는 단계로 발전함<sup>9)</sup>
  
- **(행동주의 투자자에 대한 인식 제고)** 행동주의 투자자가 주주제안 및 소수주주권 행사를 이르기 전 경영진과의 대화 단계에서 투자자와 기업 간 합의에 이르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경영개선을 통해 궁극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행동주의 투자자와 기업의 공통적인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업은 사전에 주주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여 분쟁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위임장 대결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기업은 행동주의 투자자를 적대적 세력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주의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 마련)** 주주가 기업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주주총회와 IR(기업 설명회)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한 E사 사례를 참고할 만함
  - E사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 후 부회장, CF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주주와의 대화’ 세션을 통해 회사의 현안을 공유하고 Q&A를 진행하여 회사 현황에 대한 주주의 이해도를 높임
  - E사는 또한 2023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당시 온라인으로 주주의 사전 질문을 받은 후 현장 질문에 앞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 바 있음
  - 기업 실적 발표시 컨퍼런스콜을 활용하는 경우 통상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가 아니면 개인 주주로서 기업에 직접 질문하거나 소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

9) 자세한 행동주의 투자자의 활동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김경일, 2021,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회사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3호 01

-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안 수립)** 더불어 평상시 기업의 재무, 사업, 지배구조 측면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수립 및 관리하는 한편, 행동주의자의 주주참여 활동이 있을 때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sup>10)</sup>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예시)을 참고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계획을 마련해야 함(그림 3) 참고)<sup>11)</sup>

〈그림 3〉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



\* 출처: 한국거래소

- **(공시 개선)** 마지막으로, 주주제안 및 소수주주권 행사 여부, 기업의 검토 내용, 대응 결과 및 사유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다른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 등 관한 사항 → ‘2.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에서 소수주주권 행사여부, 내용, 목적, 진행경과에 대해 연도 및 건별로

10) 유관기관 합동 보도자료, 2024.2.26., “‘한국중시의 도약을 위한’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1) 한국거래소 발표자료, 2024.2.26.,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제안 안건의 제안자, 제안 취지 및 목적, 필요성, 검토내용 등을 기재하여 주주에게 주주제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홈페이지) 주주제안 또는 소수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의 비공식적 제안 및 대화 요구, 공개 캠페인에 대해서는 소통 내역, 제안 대한 검토사항 등에 대해 공개할 것이 요구됨

• 정보공개 현황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기업은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해야 함. 그러나 코스닥 기업의 경우 매우 취약한 이해관계자 소통 관행을 보임
- 서론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사회, 주주권 보호, 감사, 이해관계자 소통 중 코스닥 기업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해관계자 소통(정보공개) 부분으로, 코스피200과 비교하여 항목별로 최대 56%p 낮은 수준을 보임 (<표 10> 참고)
  - 핵심 공개 항목 5개를 기준으로 코스피200은 평균 69%의 공개 수준을 나타냈고, 코스닥150 기업은 평균 23%의 공개 수준을 보여 평균 약 50%p의 격차를 보임
- 가장 낮은 수준의 공개율을 보인 항목은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에 관한 항목으로, 전체 145개사 중 약 15%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해당 정보를 공개함
  - 반면 ESG 등급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의 득점률이 약 38%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 등급에 관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가 크기 때문으로 추정됨
- 두 번째로 낮은 공개율을 보인 항목은 중장기 배당정책에 관한 항목으로, 기업들은 2021년 금융감독원 공시 서식 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배당수준의 방향성 및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된 재무지표의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 배당정책을 공시해야 하지만<sup>12)</sup>, 정관상 배당규정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배당은 자본이득과 함께 주주가치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서, 대표적인 국내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2015년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 방안」을 발표하여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 및 공개하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면담 등 대화를 추진하고 중점관리기업을 지정하는 등 주주가치 증대를 모색한 바 있음<sup>13)</sup>

12) 금융감독원, 202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1.1.21.개정)」, p.65

1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15,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 방안」

- 지난해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및 올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 최근 배당 및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코스닥 기업 역시 배당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됨

〈표 10〉 코스피200 - 코스닥150 이해관계자 소통(정보공개) 수준 비교

구분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영문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ESG 평가등급		중장기 배당정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코스피200 (178개사)	144개사	80.9%	105개사	58.9%	124개사	69.6%	149개사	83.7%	85개사	47.7%
<b>코스닥150 (145개사)</b>	<b>36개사</b>	<b>24.8%</b>	<b>22개사</b>	<b>15.1%</b>	<b>28개사</b>	<b>19.3%</b>	<b>55개사</b>	<b>37.9%</b>	<b>23개사</b>	<b>15.8%</b>

\* 출처: 한국ESG기준원 2023 ESG평가

•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언

- 코스닥 시장을 주로 구성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안정기보다는 성장기에 해당하여 기업의 '생존'을 위한 재무적 성과 달성이 시급함. 그 결과 일반 개인 투자자와의 소통을 후순위에 두는 관행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의무화된 정보 공시 외의 자율 정보공개에는 시간 및 비용을 들일 유인이 없어 대부분의 기업에서 IR 및 ESG 담당 인력을 두지 않거나 적은 수의 인원을 배치하는 상황임
- 특히 현재 ESG 정보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개 노력에 기대고 있는 상황임
  -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이 홈페이지에 ESG 관련 정보공개 카테고리/항목을 두고 있지 않음
  - 평가대상 코스닥150 기업 145개사 중 2022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33개사(약 23%)에 그쳤으며 이중 제3자 인증을 받은 보고서는 24개에 불과하였음
- **(정보공개 우선순위 - 배당)** 정보 공개 항목 중 적극적인 중장기 배당정책의 수립 및 공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은 주주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배당·무배당 기업에 관계 없이 배당정책을 우선적으로 공개하여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주권 보호의 첫걸음임
  - **(배당 기업)**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배당정책 적용 시기, 배당규모(목표) 및 배당지표, 배당수준의 방향성(현행 유지, 확대 또는 축소),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이력을 상세히 공개해야 함
  - **(무배당 기업)** 무배당 기업 역시 배당을 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 주주와 소통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글로벌 테크 회사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경우 장기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 자본을 사용하고 있어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그림 4> 참고)<sup>14)</sup>

〈그림 4〉 Alphabet Investor Relations FAQ

Does Alphabet pay a dividend? ^  
 We have never declared or paid any cash dividend on our common or capital stock. The primary use of capital continues to be to invest for the long term growth of the business. We regularly evaluate our cash and capital structure, including the size, pace and form of capital return to stockholders.

- **(정보공개 방식)** 기업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함
  -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의 인력 및 자원 규모를 고려할 때, 지배구조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를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SR) 및 지배구조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발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홈페이지)** 따라서, 이미 개설되어 있는 기업 홈페이지 내 IR 또는 기업 소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결권 행사 현황, ESG 평가등급 등 정보를 공개하여 주주와의 접점을 늘릴 것을 권고함
  - **(사업보고서)** 중장기 배당정책의 경우 모든 코스닥 상장기업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내 ‘배당에 관한 사항’카테고리에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4) 감사

- 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현황
  - **(감사의 중요성)**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근간으로 유지됨. 현대 사회의 경영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감사의 중요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상법상 내부감사기구, 즉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주를 대변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함(박재형·이호영, 2015).<sup>15)</sup> 또한, 외감법상 외부감사인인 제3자인 회계법인으로서 회계감사를 시행하여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
    -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부실감사 및 비적정 감사의견 등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 더욱더 주의를 요함

14) Alphabet, 2024, FAQs and General Information, <https://abc.xyz/investor/faqs-and-general-information/>

15) 박재형·이호영, 2015, “상법상 감사의 특성이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7권 제4호, p.28

- 한편,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감사위원회 모범규준(2018)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sup>16)</sup> 코스닥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가 0.66조원임을 고려할 때, 감사를 둔 기업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코스피200 178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57개사(88%)인 반면, 코스닥150 145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32개사(22%)에 불과함(〈표 11〉 참고)
- 코스닥150 기업 중에서 비상근 감사를 둔 기업도 12개사로 조사됨

〈표 11〉 코스피200-코스닥150 기업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구분	코스피200+코스닥150		코스피200		코스닥150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감사위원회	189개사	58.5%	157개사	88.2%	32개사	22.1%
상근 감사	122개사	37.8%	21개사	11.8%	101개사	69.7%
비상근 감사	12개사	3.7%	0개사	0.0%	12개사	0.08%
합계	323개사	100%	178개사	100%	145개사	100%

\* 출처: 한국ESG기준원 2023 ESG평가

- **(내부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올바른 감사시스템의 구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도 요구되는 문제임. 2023년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 결과 등에 의하면, 코스닥150 기업의 내부감사시스템은 코스피200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표 12〉 및 〈표 13〉 참고)
- **(독립성)** 코스닥150 기업은 코스피200 기업에 비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인 기업 비율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모두 90% 이상으로 높은 편임. 그러나 독립된 감사 업무 부서가 존재하는 회사의 비율은 코스닥150(53%)이 코스피200(86%)에 비해 약 33%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감사)** 감사를 둔 경우, 독립된 감사 업무 부서가 존재하는 기업의 비율은 코스닥150 (57%)이 코스피200(21%)에 비해 약 36%p 낮음. 또한 코스피 150 중 감사가 장기재직(6년 이상)하여 독립성 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이 34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전문성)** 코스닥150 기업은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감사 또는 회계 관련 전문 지식)

16) 한국ESG기준원, 2018,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p.4

보유하였는지 여부)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 2명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기업 비율이 코스닥150(19%)이 코스피200(29%)에 비해 약 10%p 낮음. 감사위원 전원이 감사 관련 전문 교육을 수강한 경우 또한 코스닥150(44%)이 코스피200(87%)에 비해 약 43%p 낮음
- (감사) 감사를 둔 경우, 감사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비율은 코스닥150(43%)과 코스피200(39%) 간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감사가 감사 관련 전문 교육을 수강한 비율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코스닥150(36%)이 코스피200(71%)에 비해 약 35%p 낮음

〈표 12〉 코스피200-코스닥150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의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현황

감사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독립된 감사 업무 부서 존재		감사위원 2인 이상 회계·재무 전문가		감사위원 전원 감사 관련 전문 교육 수강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코스피200 (157개사)	152개사	96.8%	135개사	86.0%	45개사	28.7%	136개사	86.6%
코스닥150 (32개사)	30개사	93.8%	17개사	53.1%	6개사	18.8%	14개사	43.8%

\* 출처: 한국ESG기준원 2023 ESG평가

〈표 13〉 코스피200-코스닥150 감사 선임 기업의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현황

감사	독립성				전문성			
	장기 연임 (재직 6년 이상)		독립된 감사 업무 부서 존재		회계·재무 전문가		감사 관련 전문 교육 수강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코스피200 (21개사)	3개사	14.2%	12	57.1%	9개사	42.8%	15개사	71.4%
코스닥150 (113개사)	34개사	30.0%	24	21.2%	44개사	38.9%	41개사	36.2%

\* 비상근 감사 포함한 수치

\* 출처: 한국ESG기준원 2023 ESG평가

- (외부감사 이슈) 한편, 우리나라는 상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준법지원인 등 다층적 감사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정 사건 및 부실감사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이러한 회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2017년에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권한 및 책임이 강화됨. 즉,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강화, 감사인 선임 및 사후평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견시 후속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이에 따라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해짐(홍지연, 2020). 만약,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실감사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 일례로 2021년 말 거액 횡령 사건으로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킨 F사의 경우, 회계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책임이 논의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옴

- 내부통제의 관점에서 회사에는 신뢰할 만한 감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에 충분히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함

#### • 감사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언

- **(내부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개선)** 내부감사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기구 전반의 조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 및 상근감사 설치)**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에서는 자산 규모 5천억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부득이하게 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비상근이 아닌 상근 감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상법 제542조의 10을 근거로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인 상장회사는 비상근 감사를 운용할 수 있음. 그러나 비상근 감사는 상근 감사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상근 감사를 설치하여 일상적 업무 감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박승식·박상연, 2018)<sup>17)</sup>

-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가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함(최광선, 2018)<sup>18)</sup>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에서, 사내이사를 포함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자기감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김홍기, 2019).<sup>19)</sup>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

또한, 다른 부서나 주요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감사를 둔 경우, 감사가 적극적으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회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사의 임기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나<sup>20)</sup>,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재직은 지배주주 및 경영진 견제 역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사외이사로서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재임 연수가 6년을

17) 박승식·박상연, 2018, "감사기구가 보수주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통권 제79호, p.58

18) 최광선, 2018, "내부감사 기능의 실질화 방안", 「법학연구」 통권 제55호, p.108

19) 김홍기, 2019, "현행 주식회사의 감사시스템과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제20권 제2호, p.6

20) 한국ESG기준원, 2018, "감사 모범규준", p.27

초과하는 경우를 사외이사 후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사도 이에 준하여 6년 이상 장기 연임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더불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감사 업무를 상시적이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내부 부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특히 내부 감사 업무 부서는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직속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코스닥 기업은 앞서 언급한 예시 외에도 감사 및 감사위원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야 함. 예컨대 해당 회사 또는 기업집단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기관과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와 거래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과 학연 및 지연 등의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완전한 독립성을 달성하기 어려움(이수정, 2022)<sup>21)</sup>

○ **(감사기구의 전문성 강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됨

-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수행,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를 위해서는 법률과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근거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함(최광선, 2018).<sup>22)</sup> 따라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회계·재무 분야의 오랜 경험 또는 경력이 있거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또한,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과 시장에 대한 동향 및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 감사 활동)**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더불어, 효과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감사 업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야 함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 계획을 토대로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또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개최되어야 함<sup>23)</sup>

- 미국 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보고서를 proxy statement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도 기본적인 감사 업무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이경윤, 2019)<sup>24)</sup>

□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개선)** 앞서 언급했듯 외감법 개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업무

21) 이수정, 2022,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및 직업군 분석(2021~2022년) -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 경제개혁 연구소, p.8  
 22) 최광선, 2018, 상계 논문, p.109  
 23) 한국ESG기준원, 2018,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매뉴얼·체크리스트", p.45  
 24) 이경윤, 2019, "감사위원회보고서의 자발적 공시 결정요인 :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1권 제6호, p.3115

영역에서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재무정보의 내부 감독기관으로서 외부감사인인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하여야 함

- 내부감사기구는 법률상 외부감사에 관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감시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자, 내부신고관련 고지상대방,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자,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 요청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권재열, 2019)<sup>25)</sup>
- 신 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6년간 동일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으면, 이후 3년간 감독당국이 다른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실시됨. 이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는 회계감사를 형식적 절차로서 진행하지 않고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회계감독의 총괄 책임자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최광선, 2018)<sup>26)</sup>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감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 역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 계약부터 종료까지 회계감사 전 과정에서 내부감사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상호 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이익반응계수가 크며, 서면방식보다 대면방식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이에 따르면,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가 대면 방식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경우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회계이익의 유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김유진·홍지연, 2021)<sup>27)</sup>

## 결론

-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자율적 실천 사항이 아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코스닥 기업은 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
-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등 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주주행동주의의 증가와 같은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로 설정할 것이 요구됨

25) 권재열, 201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의 역할 검토”, 『경영법률』, 제29권 제4호, pp.1-29

26) 최광선, 2018, 상계 논문, p.110

27) 김유진·홍지연, 2021, “외부감사인과 내부 감사기구 간의 상호작용이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관리회계연구』, 제21권 제1호, pp.1-23

- 코스닥 시장 내 전체 상장사는 1,690개사<sup>28)</sup>에 달하고 있으나 코스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아 동일한 수준의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코스닥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코스닥 상장사가 단계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코스닥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1)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및 관련 제도의 도입 2) 이사회 권한 확대와 전문 자문 및 교육 지원 3) 주주와의 실질적 소통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 수립 4) 감사시스템 강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 권고됨
  -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상법상 규정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뿐 아니라 지배주주 및 최고경영자와의 이해관계 등 실질적 독립성을 고려하여 선임하고,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 또는 선임사외이사 도입을 검토해야 함
  - **(이사회 권한 확대와 전문 자문 및 교육 지원)** 이사회 결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자문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해야 함
  - **(주주와의 실질적 소통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 수립)** IR 및 주주총회가 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주주행동주의 대응을 강구해야 함. 더불어 주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할 것이 요구됨
  - **(종합적 감사시스템 강화)** 내부감사기구의 형식적·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소통 등을 포함한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됨

---

28) 2024년 2월 29일 기준

---

---

# Global News

## 1. 미국, EU,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비교 및 제언

최두진\*

- 1월과 4월, 한국, 미국 그리고 EU는 각각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을 채택 및 발표함
  - 한국은 2024년 1월 24일,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발표했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 의무화 정책을 1년 유예('24년 → '25년)<sup>1)</sup>
    - '24년 현재, ▲PF 부실화와 전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설 원가 상승,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심지 주택 공급량 감소가 도심 신축 주택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있으며, ZEB 시행 시 분양가 추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sup>2)</sup>
  - 미국 에너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는 2024년 4월 3일, 건축물 탈탄소화를 위한 청사진(Decarbonizing the U.S. Economy by 2050, A National Blueprint for the Buildings Sector, 이하 Blueprint)을 발표함<sup>3)</sup>
    - 청사진의 주요 내용은 4가지 전략적 목표(▲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 ▲현장 배출 감소 촉진, ▲그리드 옻지 변환, ▲전자재 생애주기 방출량 감소)를 바탕으로 공통 목표 (평등성, 경제성, 회복탄력성) 달성을 담고 있음
    - Blueprint는 최종적으로 2050년 대비 2050년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을 제시<sup>4)</sup>
  -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24년 4월 12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이하 EPBD) 개정안을 채택함<sup>5)</sup>
    - 해당 개정안은 ▲신규 건축물의 제로 배출 기준 충족, ▲단열 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과다한 건물들의 개조(renovation)를 강제, ▲건물 자체 혹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EPBD는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제시<sup>6)</sup>
  - 본 고에서 한국, 미국, EU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로드맵을 비교하고자 함
    - 신축 건물 / 기존 건물 / 난방 시스템 관련 로드맵을 비교한 후 보완책을 제시함

---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연구원, doojin.choi@cgs.or.kr

1) 기획재정부, 2024.01.14.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 방향, p.28

2) 땅집고, 2024.04.11. '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 의무...가구당 공사비 130만원 오를 듯',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11/2024041101471.html](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11/2024041101471.html)

3) <https://www.energy.gov/eere/decarbonizing-us-economy-2050-national-blueprint-buildings-sector>

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2024.04.03. 'Decarbonizing the U.S. Economy by 2050, A National Blueprint for the Buildings Sector'

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4/12/towards-zero-emission-buildings-by-2050-council-adopts-rules-to-improve-energy-performance/>

6) European Parliament, 2024.03.12. 'Revision of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 미국, 유럽,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로드맵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표 1〉 국가별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연도별 로드맵<sup>7)</sup>

구분	미국	유럽	한국
신축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 모든 신규 건물 제로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8년 공공기관 소유 혹은 사용 신규 건물 제로 배출</li> <li>• 2030년 모든 신규 건물 제로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연면적 1천㎡ 이상 건물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sup>8)</sup> 적용</li> <li>• 2030년 모든 대형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 3등급 적용</li> <li>• 2050년 전 건물 제로에너지건축 1등급 적용</li> </ul>
기존 건물 및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5년 2005년 대비 현장 배출(on-site emission) 25% 절감 및 에너지 효율 35% 향상</li> <li>• 205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005년 대비 현장(on-site) 배출 75% 절감 및 에너지 효율 50% 향상</li> <li>② 2005년 대비 건자재 생애주기 배출량 90% 절감</li> <li>③ 2020년 대비 수요 유연성 잠재력 3배 향상을 통한 전력 인프라 비용 절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거용 건물의 1차 에너지 사용량 최소 16% 이상 절감</li> <li>② 가장 성능이 낮은 비주거용 건물 16% 개조</li> </ul> </li> <li>• 2033년 가장 성능이 낮은 비주거용 건물 26% 개조</li> <li>• 2035년 주거용 건물의 1차 에너지 20~22%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0년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용 1++, 상업 및 공공용 1+ 등급 달성</li> </ul>
난방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 히트펌프<sup>9)</sup> 원가 절감 및 화석연료 → 히트펌프 전환율 기존 대비 10배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화석연료 사용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li> <li>• 2040년 화석연료 보일러 단계적 퇴출</li> </ul>	-

○ 정책 발굴, 기술 지원, 인력 교육 등 서술이 모호한 정성적 목표는 위 표에 반영하지 않음

□ 미국, 유럽과 비교할 때,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은 하기 보완책이 필요함

○ 그린리모델링 관련 연도별 구체적 로드맵 제시 및 보조금 지원

- 한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은 해외 대비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가 부재해 중간

7) 한국의 정책은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함께 참고함

8) 에너지자립률(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 부여, 5등급(20~40%)부터 1등급(100%)까지 20% 균등 분할, [https://zeb.energy.or.kr/BC/BC03/BC03\\_05\\_002.do](https://zeb.energy.or.kr/BC/BC03/BC03_05_002.do)

9) 대기열원 및 미활용에너지열원 등 저급의 신재생에너지를 냉난방, 급탕 및 공정용의 고급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비연소 친환경 에너지 기기 (박성룡, 2010, '히트펌프 기술 동향 및 전망', p.1)

점점이 취약함. 따라서 관련 당국의 이정표 제시 및 강제성 부여를 위해 법률 규제를 통한 연도별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특히 법적근거의 필요성은 '2021년에도 제시된 제언<sup>10)</sup>임에 따라 조속한 마련이 촉구됨

-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건축물의 가치 상승(자본적지출)보다 규제 이행 및 노후 설비 보수(수익적지출) 주요 목적이 있음. 이는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함. 그럼에도 현재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부 지원은 발생한 공사비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에 국한됨. 소유주의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한 순지출 비용(그린리모델링 비용)이 순수입(에너지 효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 절감액 + 보조금)과 경제적 평형을 이루게 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함

#### ○ 히트펌프 도입 지원

- 현재 LG, 삼성, 경동, 귀뚜라미 등 보일러, 가전 업체에서 히트펌프 난방기를 생산하고 있음.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3% 이상 고성장을 유지했으며<sup>11)</sup> 미국, EU의 건축물 탈탄소화 정책에 따라 성장세를 유지할 시장임. 이에 삼성전자는 히트펌프를 생산하는 존슨컨트롤스의 냉난방공조(HVAC) 사업부 인수<sup>12)</sup>를 검토 중으로 알려짐
- 히트펌프 기술은 전기를 사용하는 점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콘덴싱 보일러 대비 친환경적이며, 타 난방 방식 대비 연평균 3~6000kWh를 절약<sup>13)</sup>할 수 있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 존재,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 탈탄소화를 위한 분명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히트펌프 도입 지원 정책은 전무하며 장려하는 문화 역시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이는 ▲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된 도시가스 인프라, ▲ 히트펌프의 높은 초기 비용, ▲ 콘덴싱 전환 이후 교체 시 짧은 교체주기에 따른 피로감 등 다양한 원인이 기저에 있음. 다만, 냉난방 등 건물의 직간접 탄소배출량은 국내 탄소배출의 24.7%를 차지하는 만큼<sup>14)</sup> 히트펌프는 그린리모델링 및 ZEB에 핵심 요소로 활약할 수 있음
- 히트펌프 발전의 재생에너지 인정, 보조금 및 기술 지원 등 선진국의 히트펌프 도입 지원 정책을 참고한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함. 특히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확충은 유럽,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와 발맞춘 기조이며 타 기관과 공조가 아닌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로 실현 가능한 점에서 우선 검토가 필요함

10)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021.10.18. p.11

11) European Heat Pump Association, <https://www.ehpa.org/market-data/>

12) 한국경제, '돌아온 M&A 키맨...삼성, 빅딜 시동 걸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1153311>

13) 한국경제, '저탄소 난방 해법 히트펌프, 국내 활성화 가능할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1115426i>

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2021.12. p.4

## Global News

### 2. EU 의회,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법률 채택

정선아\*

- 2024년 4월 10일, EU 의회는 탄소 제거 활동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이하 CRCF)'를 채택함<sup>1)</sup>
  - 동 법안은 EU의 2050 기후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sup>2)</sup>의 일환으로, 고품질의 탄소 제거 활동 제고 및 탄소농업 장려를 목적으로 제정됨
- 기존에는 탄소 제거 활동 인증에 대한 다수의 검증 방법론과 인증 메커니즘이 산재하였으며, 관련 정보 비교의 한계로 탄소 제거 활동 관련 정보의 신뢰도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음<sup>3)</sup>
  - 이에, EU 의회는 동 법안 제정을 통해 정량화된 탄소 제거 규모를 제시하고, 관련 수치 및 지표를 검증/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보고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그린워싱 이슈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CRCF 법안의 주요 내용**
  - 동 법안은 ▲활동 분류 ▲품질기준 ▲인증 프로세스 등 탄소 제거 활동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검증 방안을 제시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주요 내용 1 : 탄소 제거 활동 분류

- CRCF 규정은 인증이 필요한 탄소 제거 활동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며, 각 유형별 차별화된 인증 방법론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임

〈표 1〉 CRCF 규정에 따른 탄소 제거 활동 유형

유형	내용
영구 탄소 제거	- 대기에서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방식 - DACCS(탄소저장을 통한 직접 공기 포집) 또는 BECCS(탄소 포집 및 저장을 통한 바이오매스)와 같은 영구 탄소 저장기술
탄소농업	- 토양이나 산림에 탄소를 저장하는 방식 - 생물 유래 탄소 풀에서 탄소 포집을 강화하거나 탄소 방출을 줄이는 탄소 농업(BECCS)
제품의 탄소저장	바이오 기반 및 목재 건축 자재와 관련된 탄소 저장방식

출처: European Commission, "Q&A on the provisional agreement on the Regulation establishing an EU-wide voluntary framework for certifying permanent carbon removals, carbon farming and carbon storage in products(CRCF Regulation)" 재구성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연구원, sac@cgs.or.kr

1) EU Parliament, 2024.04.10, "MEPs adopt a new EU certification schem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408IPR20306/carbon-removals-meps-adopt-a-new-eu-certification-scheme>

2) 2020년에 승인된 정책 이니셔티브로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함

3) EU Parliament, 2024.03, "A Union certification framework for carbon removals"

## ② 주요 내용 2 : 품질기준

- 고품질의 탄소 제거 활동 식별 및 인증을 위한 4개 품질기준(QU.A.L.I.TY 기준)에 대한 인증 방법론 마련 예정

〈표 2〉 CRCF 규정에 따른 인증 품질기준

유형	내용
정량화(Quantification)	탄소 제거 규모 정량화 여부 평가
추가성(Additionality)	기존 관행·법규이상의 부가적인 탄소 제거 규모 여부 평가
장기저장(Long-term storage)	탄소 저장기간 평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탄소 제거활동이 창출하는 지속가능성 목표 등의 기여도 평가

출처: · European Parliament, EPRS Briefing 재구성

## ② 주요 내용 3 : 인증 프로세스

- 인증 신청자는 동 규정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 탄소 제거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이 동 규정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 및 인증 방법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독립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
- CRCF 공시 시스템에 인증 관련 정보 게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는 인증/재인증 감사 결과 요약, 인증 현황 등의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1`공개해야 함

